

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1. 사업개요

- ☐ (지원배경) 기술적 애로와 상호 간 이해충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협업체 재편 등으로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협업성과의 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필요성 증대
- ☐ (지원목적) 협업선정 기업의 협업제품 고도화 및 애로해결을 위한 상용화 연계지원
- ☐ (지원규모) 신규 14개 과제 내외
-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지원금액) 과제당 20백만원 이내(VAT제외)
 -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비수도권 지역인 추진기업 우대)

<지원대상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함.
 - 단, 중견기업은 추진기업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일반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 ②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2. 사업내용

□ (지원기간)

- (접수기간) 2026.09.09(수) ~ 09.18(금)까지
-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11월(예정)



□ (구성체계) 협업기업(추진기업+참여기업)

□ (지원내용)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구분		추진내용	비목	지원한도
애로 해결	제품고도화	협업을 통해 기존 시제품 개선, 국내 시험 및 인증획득,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용역비, 재료비	2,000만원
	협업고도화	공동법인, 제휴체계 구축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관련 비용	전문가활용비, 수수료	500만원
시장 개척	판로개척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유통채널 확보 등 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	용역비, 수수료 등	500만원
	제품홍보	협업제품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리플렛, 카탈로그, 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 등 관련 비용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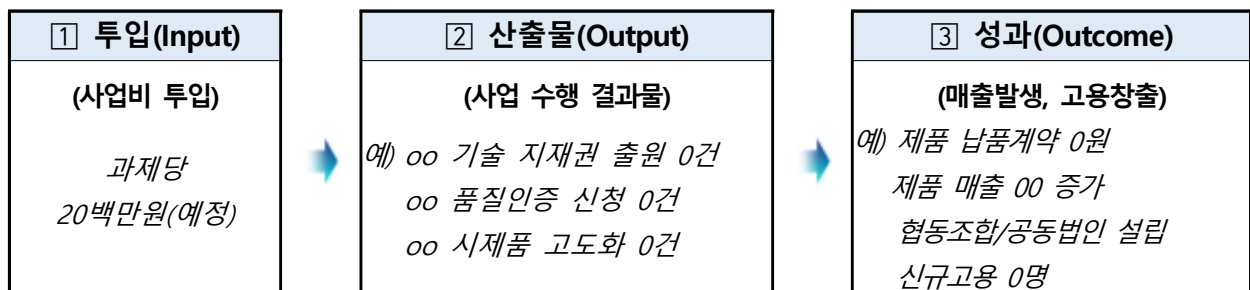
- 추진기업 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 및 법인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간이영수증 불가)
- 인건비, 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장비구매, 샘플구매, 제품양산비 지원불가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부가세 기업부담)
- 전문가활용비는 추진기업 원천세 납부 후 계좌이체

□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선금 70% 지급(10월 예정)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확인 후 잔금 30% 지급(12월 예정)

□ (지원결과)

-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중병 포함된 정산서류 필수 제출
- 사업종료 후 산출물(Output) 및 성과(Outcome)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사전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요망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6.09.09(수) ~ 09.18(금)까지**
-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joha010@k-sca.or.kr) 접수
- ☐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출자
1	필수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추진기업
2		청렴 서약서	1부	추진·참여기업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추진·참여기업
4		신청자격 검토표	1부	추진기업
5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index)발급	1부	추진기업
6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기업별)	추진·참여기업
7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3~2025년) * 국세청 확인본	1부	추진기업
8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	추진기업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발급 * 지방세 : 민원 24(minwon.go.kr)발급	1부	추진기업
10		회사소개 자료(카탈로그, 브로슈어, PPT 등)	각 1부(기업별)	추진·참여기업
11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시 해당	1부	추진기업

4. 선정평가

- ☐ (평가절차) 요건 · 서류검토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요건·서류검토)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평가)
 - 제출서류 기반으로 지원 필요성, 협업제품의 차별성,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진행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하고, 종합평점 고득점순으로 선정

5.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기획팀	조하영 대리	042-331-0572

6.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전담기관의 협약체결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 성과보고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기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접수 및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 추진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기개발되었거나 타 정부사업을 통해 기지원 받은 경우

○ 추진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 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㉔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㉕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㉖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방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5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2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붙임 1. 제출서류 1부. 끝.